

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2022. 5.

함양군수



백전면 농촌중심지 운영위원장



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시설물 목록

시설명	위치	면적(m ²)		구조	등기일자 (준공일)	재산 소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다목적광장	백전면 평정리 389-1	5,004		체육시설 잔디광장	2020. 11. 5.	함양군	
평촌마을회관	백전면 평정리 498-1	390	1층 : 126.05	조적조	2020. 11. 5.	마을회	마을회
농기계 창고	백전면 평정리 566	1,634	1층 : 330	철근콘크리트	2020. 11. 5.	마을회	마을회

위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및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백전면 농촌중심지 운영위원회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백전면 농촌중심지 주민·도시민들과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백전면 농촌중심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기간) ① 본 협약의 위·수탁기간은 2022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5년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이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한번만 갱신(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방법) ① “을”은 중심지공동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 운영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

③ “을”은 공유시설물(물품포함)의 훼손(분실)시 규격과 성능이 동일 사양으로 보강·교체하는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④ “을”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갑”的 승인이 받아 “을”的 부담으로 시설물을 개선·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백전면 농촌중심지 주민이 아닌 자가 시설물을 이용할 시에는 “을”인 남덕유산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이용료를 책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부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상하수도사용료, 전기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 제반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해 “갑”이 판단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도록 한다.

1. 천재지변 등 “을”的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 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복구비
2. 법령의 개정이나 “갑”的 필요에 의한 시설, 장비의 추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 년수를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 등

제6조(보험가입) “을”은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약기간 동안에 대하여 “갑”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우려가 있는 물건 포함)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 증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제7조(수탁자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제8조(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위수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2. “갑”이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3.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을”이 본 협약 조항을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시설물의 문제점 및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을”的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제9조(해약시 처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약된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的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① “을”은 “갑”이 위탁한 「백전면 농촌중심지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백전면 농촌중심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법률) “갑”과 “을”은 본 협약 조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함양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위의 제 11조에 따른 법규 해석 기준에 따른다.

제13조(효력발생 시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갑”은 「백전면 농촌중심지 공동이용시설」 일체를 “을”에게 인계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2022년 6월 2일



위탁자(갑) 함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강승제



수탁자(을) 백전면농촌중심지 운영위원장 심정수